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4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3월 29일, 교육감
상정일자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 내용	• 학교 유휴교실에 수원시와 협력을 통해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전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고자 함.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9일, 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8년 4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질의/답변, 토론 후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김기서)

가. 제안이유

- 학교 유휴교실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인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개요

○ 협약대상 및 기간

- 대상 : 수원시
- 기간 : MOU(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 협약방법

- 교육감 결재 →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전 동의 → 업무협약 체결

○ 협약목적

- 수원지역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 사업내용

-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소재 학교 유휴시설 무상대부
- (수원시청) 돌봄 및 방과후 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 (상호협력) 안정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시범사업) 서호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서관동)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춘금)

※ 검토보고서 요지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업무협약서----- [별첨 2]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수석전문위원 : 박 춘 금

□ 검토의견

I.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

-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II. 예산 및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III.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이행함

IV. 세부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가 수원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종료 후 보육 및 교육활동을 위해 수원시 소재 학교 유

휴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인 “학교시설 활용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임.

-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 소재 학교 유휴 시설을 무상 대부하고 수원시청에서는 돌봄 및 방과후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까지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사전 협의하였음.
- 본 동의안에 의해 현재 추진예정인 지역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권선구 서호초등학교로 수원시에서 약 3억 3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서호초 서관 3층 건물을 지역아동센터로 리모델링할 예정임. 이 센터는 학교 본 건물과 구분된 서관 별도 건물로 방과후 여가센터 사무실, 집단프로그램실 2실, 조리실과 식당, 화장실 등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61개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중에 있고 경기도에는 10개가 운영중에 있음.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1월 23일 개소한 성남 청솔초 유휴교실을 활용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가 최초 사례임.
- 시립지역아동센터는 기존 학교에서 실시하던 돌봄 교실보다 아침 일찍 시작하고 저녁식사 제공 후 늦게까지 돌보는 시간이 연장¹⁾되어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돌봄교실에는 초등보육전담사 1명이 24명의 아이들을 혼자 전담하는 방식과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4명의 인력이 최대 49명²⁾의 아이들을 돌보

1) 학교 돌봄교실은 학기중에는 오후 1시부터 4시반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는데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방학중에도 학기중과 같이 저녁까지 운영한다.

게 되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적 측면과 생활지도, 안전한 보호 등 모든 면에서 아이들에게는 훨씬 질높은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V.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수원시와 협력을 통해 창출한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인 “학교시설 활용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³⁾ 및 제50조⁴⁾ 및 제52조⁵⁾ 등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추진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학생이 50명 이상이면 영양사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인력 및 구비조건이 복잡해지는 관계로 지역아동센터 정원을 49명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전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현황(2017.12월 기준)

합계	경기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울산
61	10	23	3	4	1	3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5	4	2	1	2	2

□ 시·도별 세부현황

연번	시도명	시군명	시설명
1	경기도	성남시	(시립)도담상대원동지역아동센터
2	경기도	성남시	(시립)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
3	경기도	성남시	(시립)도담양지동지역아동센터
4	경기도	성남시	시립도담분당동지역아동센터
5	경기도	성남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6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7	경기도	과천시	부림지역아동센터
8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9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광적공립지역아동센터
10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회천2동공립지역아동센터
11	강원도	영월군	연당별빛지역아동센터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립삼선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불암골지역아동센터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공릉지역아동센터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공릉행복지역아동센터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꿈나무지역아동센터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노원1지역아동센터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상계1동지역아동센터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상계숲속지역아동센터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초안산숲속지역아동센터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한내지혜의숲지역아동센터

연번	시도명	시군명	시설명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벤엘지역아동센터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예꿈터지역아동센터
3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
35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36	부산광역시	사하구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
37	부산광역시	사상구	쾌내행복마을지역아동센터
38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
39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40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립지역아동센터
42	광주광역시	광산구	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
43	울산광역시	동구	푸른솔지역아동센터
4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4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4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47	강원도	영월군	이든샘지역아동센터
48	강원도	영월군	푸르미지역아동센터
49	강원도	정선군	별빛달빛지역아동센터
50	강원도	화천군	푸르나지역아동센터
51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52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53	충청남도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54	충청남도	홍성군	꿈드림지역아동센터
55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꿈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
56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놀자지역아동센터
57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밝은지역아동센터
58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지역아동센터
59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키즈지역아동센터
6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
6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공립지역아동센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 MOU(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는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돌봄 및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 구축에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기도교육감과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가 수원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외의 돌봄 및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해 수원시 소재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말한다.

제3조(협력분야)

1.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① 수원시 소재 학교 유휴시설 무상대부
 - ②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③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학교시설 이용 지원
2. 수원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① 돌봄 및 방과후 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질 관리
 - ③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3.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 ① 안정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② 서호초등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2018년)
 - ③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 확대 추진

제4조(이용대상) 맞벌이, 취약계층 등 저학년 아동부터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하고
정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고학년 아동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학교시설을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한다.
2. 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가
합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협약기간)

1. 이 협약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가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협약서가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1. 양 기관이 MOU(업무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8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이 MOU(업무협약)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일

 경 기 도 교 육 감
이 재 정

 수 원 시 장
염 태 영